

신용정보 활용체제 변경 (2022.03.30)

02.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,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(최신화)

(가)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(신용)정보 제공

변경전	변경후
신용정보원, 신용평가기관	한국신용정보원, 신용평가기관, 손해보험협회, 생명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 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

04.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위탁을 받는 자 (최신화)

수탁업체명		수탁업무(제공목적)	제공항목	보유기간
변경전	변경후			
회사와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설계사 (총 1,267) 보험대리점 (총 1,244) 중개사/전문인(업) (총 135) 퇴직연금모집인 (총 17) ※세부명단은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.	회사와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설계사 (총 2,170) 대리점 (총 1,334) ※세부명단은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.	보험계약의 모집 및 사후 관리		업무완료 시까지